

#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과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한국어 침식과 그 영향\*

권희주\*\* · 허재영\*\*\*

##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어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한국어 침식 현상을 언어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률·행정 분야의 언어침식이 갖는 의미와 광복 이후의 영향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침식은 루이 장 칼베가 『언어학과 식민주의』에서 사용한 신조어 ‘글로토파지 (glottophagie)’를 번역한 용어로, 언어의 식민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 지배는 군사,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언어,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침탈이 발생한다. 특히 ‘법률·행정’은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는 주된 수단이며, 그것은 언어 식민화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식 법률과 행정 체계가 등장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며, 당시에 일본어의 영향이 매우 컸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각종 법률과 행정은 모두 일본어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문 법률 용어 사전, 법령 번역, 공문서식류 책자 등이 나타났다. 한자 중심의 사전 등재어나 서식류 문장에 일본문을 부속함으로써 언어침식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법률·행정 용어도 일본의 법령에 근거했다. 그 결과 광복 이후의 국어회복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문체나 어휘뿐만 아니라 언어의식에서도 언어침식의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언어침식(글로토파지), 일본어, 영향력, 법률·행정 용어, 언어의식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제1저자: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조교수(shiawase@konku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hjy435@hanmail.net)

## | 차례 |

1. 머리말
2. 언어의 식민화와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
3.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한국어 침식과 그 영향
4. 결론

## 1. 머리말

‘법률 용어’ 또는 이를 줄인 ‘법률어’는 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아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한국어 사전이 편찬되면서 ‘법률’과 ‘경제’ 분야의 어휘는 전문 분야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927년 송완식의 『백과신사전』에서 ‘철학, 심리학, 논리학, 교육학, 법률학, 경제학,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광물학, 물리학, 화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윤리학’ 등 16개 학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설정한 예가 있고, 1940년대 초 원고가 완성된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이 사전은 1947년부터 1957년 사이 6권으로 간행됨)에서도 49개의 전문어를 분류하면서 ‘법률’과 ‘경제’를 포함하였다. 이에 비해 ‘행정 용어’는 한국어 사전의 전문 용어의 하나로 설정되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런데 1993년 총무처에서 ‘행정 용어순화편람’을 고시하고, 1996년에도 ‘고쳐진 행정 용어’를 고시한 적이 있듯이, ‘행정 용어’는 전문 용어의 한 분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서 두 분야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두 분야의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설정이 어렵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법률’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한국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뜻한다. 이에 비해 ‘행정’은 넓은 의미로 “정치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문 용어로 쓰일 경우,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행정부의 국가 작용”을 지칭한다. 전통적으로

행정의 대상은 ‘재정, 인사, 경찰’을 비롯하여 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라 ‘소방, 위생, 복지,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 관리, 산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으나, 본질적으로 행정 행위는 법률과 행정 명령, 조례 등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공문’을 통해 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법률 용어’와 ‘행정 용어’는 유사한 성격을 띠며, 국민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한국어 침식 현상 및 영향 문제를 법률·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근현대는 근대식 정부 조직과 법률이 등장한 1894년 갑오개혁 전후로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를 의미한다. 언어침식은 1974년 프랑스 언어사회학자 루이 장 칼베(Louis-Jean Calvet)가 『언어학과 식민주의(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에서 사용한 신조어 ‘글로타파지(glottophagie)’를 번역한 용어로<sup>1)</sup>, 언어의 식민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 식민 지배는 군사, 정치, 경제적 면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언어,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침탈이 발생한다. 특히 ‘법률·행정’은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는 주된 수단이며, 그것은 언어 식민화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령과 사전, 공문서식 등을 대상으로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어 침식 현상과 그 영향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

1) Jean-Paul Sartre, “Préface,” in Louis-Jean Calvet,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1974; 이병혁 편, 『언어사회학서설』, 까치, 1986.

## 2. 언어의 식민화와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

### 1) 언어의 식민화

언어학에서 ‘언어의 식민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회언어학 연구의 한 경향인 ‘언어사회학’이 발달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언어학회에서 편찬한 『사회언어학사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사전에 따르면 ‘사회언어학’은 ‘변이사회언어학’, ‘언어사회학’, ‘의사소통 민족지학’ 등의 주요 갈래가 있는데, 언어사회학은 “언어 및 언어사용과 관련되는 여러 사회문제에 일차적 관심을 갖는 학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언어사회학은 조수아 피시만(Fishman J.)으로부터 본격적인 발달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전에서는 ‘언어사회학’을 미시 사회언어학이 아닌 거시 사회언어학적 차원에서 ‘언어 교체, 이중 언어, 부호 전환, 정체성 확인’ 등을 중시하는 학문으로 풀이하였다.<sup>2)</sup>

언어의 식민화 문제는 1950년대 이후 파농(Fanon Frantz), 사르트르(Sartre Jean-Paul) 등의 식민주의와 인종 차별, 성과 관련된 철학적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난야 라비샹카르(Ananya Usharani Ravishankar)는 ‘언어 제국주의: 언어를 통한 시민 폭력’에서 “특정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문화와 동일시하고, 그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식민지를 경험한 피지배언어 사용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동포들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라고 한 파농의 검은 피부 흰 가면의 흑인 언어를 인용하고 있다.<sup>3)</sup> 파농은 프랑스로서 서인도 제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치 철

2)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사전』,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98~99쪽, 140쪽 참조.

3) Ravishankar, Ananya Usharani. “Linguistic Imperialism: Colonial Violence through Language.” Paper presented at the *Language: Uses and Misuses Conference*,

학자였다. 그는 알제리 독립 전쟁을 지지하고, 민족해방전선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식민주의의 본질과 탈식민 문제에 대한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Black Skin, White Masks*(1952), *A Dying Colonialism*(1959), *The Wretched of the Earth*(1961), *Toward the African Revolution*(1964) 등은 그가 남긴 명작이며<sup>4)</sup>, 그 가운데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제1장에서 ‘흑인과 언어’라는 제목을 사용했듯이, 식민주의와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피지배자들의 내면 심리를 흥미롭게 서술했다. 식민시대 인종적 편견과 관련된 언어 습관은 사르트르(Sartre, Jean-Paul)가 ‘검은 오르페우스(Orphee noir)’<sup>5)</sup>에서 특정 단어가 함축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식민주의적 우월성과 정의감을 갖게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식민 지배자의 언어가 ‘피지배자들 사이의 영원한 매개자’가 되도록 한다는 논술에서 드러나듯이<sup>6)</sup>, 식민 이후에도 강렬하게 지속되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대 이후 사회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언어의 식민

---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June 2021, pp. 1~6.

- 4) 한국에서도 프란츠 파농의 저서는 여러 종류가 번역되어 있다. *A Dying Colonialism*은 1979년 성찬성 역 『몰락하는 식민주의』(한마당), *The Wretched of the Earth*는 1978년 김남주 역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청사), 1979년 박종렬 역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광민사), 2004년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그린비) 등으로 번역되었다. *Black Skin, White Masks*는 2014년 노서경에 의해 『검은 피부, 하얀 가면』(문학동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 5) 사르트르의 ‘검은 오르페우스’는 1948년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Leopold Sedar Senghor)가 편집한 『프랑스어로 된 새로운 흑인 및 말라가 시 선집(*Anthologie de la nouvelle poesie ne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caise*)』의 서문으로 쓰인 것이며, 1954년 독일의 얀하인츠 얀(Janheinz Jahn)의 『검은 오르페우스(*Schwarzer Orpheus*)』에 편집되었고, 그 후 울리 바이어(Ulli Beier)가 나이지리아 이바단에서 창간한 저널 『검은 오르페우스』를 통해 영어권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ean-Paul Sartre, Steven Ungar, “What is Literature?”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참고).
- 6) Jean-Paul Sartre, “Préface,” in Louis-Jean Calvet,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1974, pp. 13~52.

화와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1974년 루이 장 칼베는 『언어학과 식민주의』에서 '언어, 방언, 사투리, 전문용어' 등과 같은 언어학적 개념과 가치가 특정 시대 이념 투쟁의 상징이었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것임을 전제로, '공용어, 사회적 또는 지역적 변종, 방언과 사투리, 전문용어 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언어침식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제1부 일반적인 문제들에서 '언어 이론과 식민주의', '방언과 국어', '언어 차원의 식민 과정', '언어에 나타난 식민 지배의 흔적', '언어에 대한 식민 담론', '언어와 민족해방'을 다루었고, 제2부 개별 연구에서는 '프랑스 내 언어식민주의', '라놀프히텐과 존 오브 트레비사에 따른 14세기 영어의 상황', '밤바라어, 디올라어와 말린케어의 기수법 체계', '밤바라어의 아랍어와 프랑스어 차용', '아프리카 내 프랑스어'와 관련한 논문을 수록하였다.<sup>7)</sup> 여기서 주목할 대상은 '언어 차원의 식민 과정'과 '지배 흔적'에 관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칼베는 언어의 식민화 과정이 '이름을 붙일 권리'로부터 '식민 지배언어가 상류계급으로부터 일반인으로 확산되는 수직적 관계', '지배언어를 사용하는 상류계급(지배언어를 단일어로 사용)'과 피지배언어를 사용하면서 지배언어를 획득하려는 '수평적 관계(도시 하류계급의 언어)', 피지배언어만을 사용하는 '시골 민중'(단일어 사용)의 공존을 거쳐 최후로 '승리를 구가하는 식민주의'로 이어진다고 도식화하였다.<sup>8)</sup> 이와 같은 도식이 모든 식민주의 언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식민화 과정의 보편적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 이 원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각 언어에서 유의미한 분석 원칙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근대 이후 일제강

7) 이 책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이병혁 편지『언어사회학서설』(까치, 1986)에 수록된 김경일 번역의 '식민주의와 언어'이다. 이 번역본에서는 칼베가 사용한 '글로타파지'를 '언어침식'으로 번역하였다. 그 후 2004년 김병욱 번역의 『언어와 식민주의-언어 포식 이야기』(유로서적)에서는 '언어포식'으로 번역하였다. 축차적 의미에서 '글로타파지'는 '포식'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나, 언어 침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언어침식'이라는 번역어가 좀 더 유의미해 보인다.

8) 이병혁 편, 앞의 책, 1986, 150~151쪽 참조.

점기까지 일본어 보급에 따라 진행된 한국어 침식 현상을 규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파농과 사르트르가 냉철하게 제시했듯이, 식민지 언어침식은 식민주의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넬슨 말도나토 토레스(Nelson Maldonado-Torres)는 “식민성은 식민주의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그것은 책 속에서, 학업 성취 기준 속에서, 문화적 패턴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sup>9)</sup>라고 하였다. 콩코디아 대학의 사예 사예다인(Sayeh Sayedayn)은 토레스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의 식민화는, “식민 지배자들이 토착언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토착민, 비서구적 정체성을 표적으로 삼아 식민지 주민들의 정신, 사상, 가치관을 장악”하려 한 식민 통치 방식의 하나이며, 그것은 식민지를 벗어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언어제국주의’와 칼베의 ‘식민주의 언어’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언어사회학 연구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09년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 국제학술대회와 2024년 함마멧-튀니스(Hammamet en Tunisie) 국제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엑상 프로방스 학술대회는 ‘사회언어학의 기초와 시민 참여’, ‘언어 시장과 그 함의’라는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언어학의 중심 주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민 참여’는 사회 지향적 언어 실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나타내며, ‘언어 시장’은 언어교육, 언어 계획, 언어 경쟁과 쇠퇴와 관련된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학술대회를 기반으로 라하르마탄(L'Harmattan) 출판사에서는 2010년 『사회언어학을 위하여 - 루이 장 칼베를 위하여(Pour la (socio) linguistique: Pour Louis-Jean Calvet)』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사회언어학 발달에 대

---

9) Nelson Maldonado-Torres, On the Coloniality of Bein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a Concept, *Cultural Studies* 21, no. 2-3 2007: 243. cited in Sayeh Sayedayn, 202, 134.

한 회고, 주요 연구 분야, 현장 연구와 관련된 기고문 등으로 구성되었다.<sup>10)</sup> 함마멧-튀니스 학술대회는 『언어학과 식민주의』 50년 후-새로운 개념, 새로운 실천, 새로운 저항이라는 주제 아래 ‘사회언어학과 식민주의’, ‘언어, 공간 그리고 식민성’, ‘언어, 교육 및 과학정책’의 세 분야에서 ‘사회언어학은 지식의 탈식민화를 포함한 탈식민화 논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회언어학의 인식론적 토대, 이론적 접근 방식, 방법론적 절차, 실증적 실천의 어떤 측면들이 학문의 식민성을 구성하거나 또는 구성하지 않는가?’, ‘응용 사회언어학의 어떤 측면들이 언어적 본질화, 위계화, 그리고 지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가?’를 묻는 학술대회였다. 이처럼 ‘언어 제국주의’와 ‘식민화’ 연구는 기존의 구조주의나 생성언어학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시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로 지속되어 왔으며, 언어 의식, 언어교육, 언어정책 등 제반 분야의 연구에서 언어의 식민화 과정과 그 실증적 사례와 영향, 탈식민화에 내재된 한계 등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과 언어침식

한국에서의 ‘언어 제국주의’와 ‘식민화’ 문제는 1986년 이병혁 편저 『언어사회학서설-이데올로기와 언어-』에서 조수아 피시만, 루이 장 칼베 등의 이론이 소개된 이후 ‘언어 이데올로기’와 함께 본격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혁은 『한국사회와 언어사회학』에서 ‘사회변동과 언어’ 차원에서 ‘일제하의 언어생활’, ‘방송언어’, ‘은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다루었고, ‘사회적 인지와 언어’ 차원에서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논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sup>11)</sup> 또한 이병혁 편저에 포함되었던 칼베의 『

10) 이 책은 Médéric Gasquet-Cyrus, Alain Giacomi, Yvonne Touchard, Daniel Veronique 등이 편집했으며, 2010년 *Pour la (socio)linguistique: Pour Louis-Jean Calvet*라는 제목으로 L'Harmattan에서 출판하였다.

언어학과 식민주의』는 2004년 김병욱에 의해 『언어와 식민주의-언어 포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완역되었고, 그 이전에도 ‘언어이데올로기’라는 제목의 번역서와 저서가 다수 출현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한국사회 언어학회가 조직되고, 그에 따라 거시 사회언어학 차원에서 언어와 사회변화, 언어정책, 언어교육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2년 『사회언어학사전』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언어의 식민화와 탈식민화’라는 주제는 2000년대 이후 거시 사회언어학의 주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sup>12)</sup>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가 쓰고, 이연숙·고영진·조태린이 번역한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sup>13)</sup> 등은 이를 반영하며, 한국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본어와 관련한 이연숙이 쓰고, 고영진·임경화가 옮긴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인식』,<sup>14)</sup> 역시 이연숙이 쓰고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가 옮긴 『말이라는 환영-근대 일본의 이데올로기-』<sup>15)</sup> 등은 ‘언어의 식민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언어제국주의’를 주제로 한 저서들이다. 또한 고영진·김병문·조태린의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sup>16)</sup> 미쓰이 다카시가 쓰고 임경화·고영진이 옮긴 『식민지 조선의 언어지배 구조』<sup>17)</sup> 등은 일제강점기 한국어 침식과 관련한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11) 이병혁, 『한국사회와 언어사회학』, 나남, 1993.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13) 三浦信孝·糟谷啓介, 『言語帝國主義とは何か』,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14) イ・ヨンスク, 『「国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인식』, 소명출판, 2006.

15) イ・ヨンスク, 『「ことば」という幻影—近代日本の言語イデオロギー』,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 옮김, 『말이라는 환영-근대 일본의 이데올로기-』, 심산출판사, 2012.

16) 고영진·김병문·조태린 편, 『식민지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소명출판, 2012.

17) 三ツ井崇, 『朝鮮植民地支配と言語』, 임경화·고영진 옮김, 『식민지 조선의 언어지배 구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에도 엑상 프로방스와 함마멧 튀니스에서 제기되었던 ‘언어의 식민화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한국어 연구’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근대 이후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 문제는 1945년 광복 직후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기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1호’(1945.9.7.) 제5조에서 “군정 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 또는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는 영어를 기준으로 함”, ‘재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6호’(1945.9.29.) 제4조 ‘교훈(敎訓)의 용어’와 관련하여 “조선 학교에서의 교훈 용어(교수용어)는 조선어로 함.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교재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이라고 한 것은 광복 직후 한국어의 지위가 일제강점기 박탈되었던 자국어로서의 지위를 찾는 과도기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부 수립 직후 1948년 10월 8일 ‘한글전용법’을 공포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문(한글)이 자국어의 어문으로서 지위를 찾은 것을 의미한다. 즉 광복 이후 교수 용어나 공용문서에서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공통어는 한국어이며, 공용 문자는 ‘한글’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침식되었던 한국어를 회복하는 일은 광복 직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글운동’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48년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우리말 도로 찾기』나 각종 용어 제정, ‘공문 용어 고쳐쓰기’ 등은 언어침식에 대응하는 방식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sup>18)</sup> 그럼에도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 과정과 실증적인 사례,

---

조』, 소명출판, 2013.

18) 광복 직후 1970년대 초까지 한국어 회복과 관련한 사실들은 한글학회(1971)의 『한글학회 50년사』, 이응호(1973)의 『미군정기 한글운동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글운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일본어 보급에 대응하여 한국어와 문자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광복 이후 ‘국어회복’과 관련한 운동을 나타

그 영향 등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언어 제국주의’와 ‘식민화’, ‘탈식민화’ 차원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희순은 언어 제국주의 관점에서 미군정기 영어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sup>19)</sup>, 서민정은 식민지 언어를 문화 복수성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sup>20)</sup>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언어 제국주의’는 영어와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이 다수를 이루며, 일부는 문학어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이종어 상황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김환희의 ‘옛이야기 전승’과 관련된 연구<sup>21)</sup>, 권보드래의 1910년대 이종어 상황과 관련된 논문 등은 이를 잘 나타낸다.<sup>22)</sup> 그럼에도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 사례와 단계, 광복 이후 언어침식이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언어의식에 미친 영향 등을 ‘언어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 성과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대 이후 한국에서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은 1895년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제 도입 이후의 침식은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제도 확립 과정에 나타난 모어 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언어 권력 연구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재영은 ‘학제 도입 이전(1880~1894)’, ‘학제 도입기(1895~1905)’, ‘통감시대(1906~1910)’의 세 시기 지식 유통 차

---

내는 용어로 널리 쓰였다.

- 19) 현희순, 「언어제국주의 관점으로 본 미군정시대의 영어정책」, 『인문학연구』 제19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20) 서민정, 「문화 복수성의 관점에서 읽는 식민지의 언어」, 『코기토』 제76집,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 21)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 강제된 일본어 교육이 <나무꾼과 선녀> 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 22)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종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악어문학』 제54집, 동악어문학회, 2010.

원에서의 유학생 문제와 외국어교육의 정책·제도적인 면과 일본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서술한 바 있다.<sup>23)</sup> 또, 『일제강점기 어문정책과 어문생활』과 『일본어 보급 및 조선어 정책 자료』에서 『매일신보』의 일본어 보급 관련 담론 자료를 수집·정리했는데<sup>24)</sup>, 이에 따르면 1910년대 식민 초기부터 각종 강습회와 학습서, 일반 서식류를 통해 광범위한 일본어 보급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본어의 세력’, ‘국어 보급의 급무’ 등과 관련된 논설이 발표되었다.<sup>25)</sup> 이러한 논설은 1920년대 이른바 문화정치 체제에서 발행된 ‘한글신문’이라는 『조선일보』에서도 확인되는데, 다음을 살펴보자.

[朝鮮人 教育和 用語 問題]

五月 六日 東京 日日新聞에는 ‘朝鮮人 教育和 邦語’라는 제하에 좌와  
 如한 社說이 揭載되얏기로 參考키 위하야 此를 譯載하노라.

目下 京城에서 開會 중인 朝鮮教育調查委員會에서 教授上에 日鮮語  
 中 何國語를 使用할 것인가 함에 대하야 激烈한 議論이 交換되며 委員  
 中에 朝鮮 貴族 及 學者輩(日本委員)는 朝鮮語 採用을 力說한다 云한다.  
 抑 新領土에서 母語 使用의 可否에 就호야는 상당한 議論이 存호는 바이  
 고 今日에도 確定的 原則으로 認호 만호 것이 尙無호다. (中略) 贅言호  
 것도 역시 朝鮮은 日韓合併에 의하야 國際的 地位를 喪失호고 日本가 一  
 體가 되었다. 元來 統合的 國家라는 見地로 見호 진디 一個의 統一된 國  
 語를 使用호는 이상의 相違호 國語를 併用하는 것보다 便利호 것은 勿  
 論이다. 그러나 那 國語가 文藝上 著大호 價値가 잇고 不然호 더라도 世  
 界語로 勢力이 偉大한 것도 잇스즉 맞치 加奈陀에서 佛語를 保存호는 것  
 처럼 一國家 內에 相異호 一個 이상의 國語를 併用호 여도 無妨호 것이

23) 허재영, 「《우리말 도로 찾기》의 국어 순화 원리」, 『사회언어학』 22권 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  
 24) 허재영, 『일제강점기 어문정책과 어문생활』, 경진, 서울, 2011; 「근대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25) 『매일신보』 1913년 7월 18일 ‘일본어의 세력’, 1913년 11월 2일과 5일 ‘국어보급의 급무’, 1918년 8월 23일 ~ 25일의 ‘선인동화(鮮人同化)’ 등이 대표적이다.

다. 그런데 朝鮮의 境遇는 如何 否나 否면 그 國語의 힘히 심히 微弱 否야 朝鮮人 自身도 諺文보다 도로혀 漢文을 假用 否고 잇는 터인즉 同地에서 는 차라리 日本語의 使用을 獎勵하는 편이 便利 否리라고 思 否노라.

日本語의 獎勵는 결코 朝鮮人의 利益을 妨害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일즉이 佛國이 佛領 印度支那에서 經驗한 바와 갓치 日本語의 獎勵가 朝鮮人의 民族性을 破壞 否고 德性을 損傷 否는 것일지면 朝鮮 民族에게 큰 일이니 假使 國家의 統治上으로는 便利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獎勵하는 것은 思考를 要할 것이다. 그러나 日本語와 朝鮮語는 本來에 同系라고 呼 만치 서로 酷似 否고 또 使用 否는 文字가 兩者가 모다 全然 同一 否니 邦語를 朝鮮人間에 獎勵 否더리도 佛蘭西가 맞본 不幸 否 經驗을 反復 否리 가고는 및지 안노라. 速히 日本語의 修得으로 朝鮮人과 日本人의 交際가 圓滑 否게 되야 精神의 或으나 物質的 或으나 所得이 必要할 것이며 渾一 融和의 實도 또한 이로조차 居 否는 것은 想像키 不難 否다.(下略)<sup>26)</sup>

이 기사는 1921년 5월 6일 도쿄에서 발행하는 『니치니치신분(日日新聞)』에 실린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 보급과 관련한 일본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번역 등재한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구의 식민지 언어정책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 병합 이후 ‘신영토’로 일본의 일부가 되었고, 조선인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익되며, 조선어의 힘이 미약하여 조선인 스스로도 언문보다 한문을 빌려 쓰고 있고, 일본어와 조선어는 본래 동일 계통의 언어이므로 ‘교수 용어’부터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1920년대는 ‘문화정치’를 표방했음에도 조선총독부는 더 강력한 일본어 보급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예는 조선총독부의 『관보』에서 1910년대부터 20년대 초까지 존재했던 ‘조선문 번역 자료’(일본문으로 발표한 주요 법령과 기사를 조선문으로

26) 「조선인 교육과 용어 문제」, 『조선일보』, 1921. 5. 10. (밑줄 논자, 이후 동일)

번역 게재한 짓)를 더 이상 신지 않았고, 공교육에서 일본어 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교수 용어도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한 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조선인의 어문생활에서 일본어의 침식은 공적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 1930년대 안서 김억이 연재한 ‘언어의 순수를 위하여’를 살펴볼 수 있다.

[언어의 순수를 위하여]

ㄱ. 新聞 雜誌에 連載되는 小説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版에 박아노타 십히 그 뜻해는, “어테를 갑니까?”라고 산애가 물었다. “나요? 散步 갑니다.”라고 女子는 對答했다. 열이면 아홉쯤은 이러한 ‘라고’라는 말을 依例히 使用했스니 이 어인 일입니까. 풋내기 新進이니 既成 作家이니 할 것 업시 모다 이 어색한 ‘라고’를 奇怪하다 할 만치 連發하는 것을 보니 朝鮮말의 美와 純實性을 爲해 寒心한 생각을 禁할 수가 업습니다. “간다고 해 줍시오”나 “오라고 하겠소”하는 말 가튼 것은 대단히 듣기 조코 아름답은 것이나 “어테를 갑니까라고 물었다”와 가튼 것에는 가튼 말의 가튼 ‘라고’건만, 如干만 듯기 실코 眞正한 생각을 禁할 수가 업는 것을 어찌합니까. 말할 것도 업시 이것은 저 日本말에, “學校へ行く 彼れが 云ひました”의 ‘ご’를 고대로 집어 삼킨 것이외다. 이러한 고대로 삼켜 놓는 번역처럼 무섭은 害毒은 업는 것이외다.<sup>27)</sup>

ㄴ. 아모리 그들이 日本말을 잘 짓걸이고 잘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번역이란 날대로 삼키는 ‘올은다’ 式의 最上일 모양이니 그 實은 日本말을 理解한다고 할 수가 업는 일이외다. 眞正한 意味로 日本말을 理解하는 사람으로는 決코 ‘上がる’를 ‘올은다’고 惡譯해 노홀 理가 업는 것이외다. 日本말도 ‘올은다’ 式으로 使用할 모양이니 日本말도 적지 안케 이들 세문에 固有한 純實性을 일혀버릴 모양이어나와 나날이 素質性을 일혀버리는 朝鮮말에는 朝鮮말도 日本말도 아닌 混血語라 할 투기말의

27) 김안서, 「언어의 순수를 위하여」(1), 『동아일보』, 1931. 3. 29.

強微的 生産을 받게 되니 생각하면 짝한 노릇이외다. 世上에 무섭다 무섭다 해도 沒理解의 無識처럼 두렵은 것은 업습니다.<sup>28)</sup>

이 글에서 확인되듯이 안서 김억은 한국어 인용 조사 ‘라고’가 일본어 번역 과정에서 생성된 표현이며, 한국어에서 ‘(어떤 일이) 터진다’라는 의미로 ‘올은다’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일본어를 직역한 데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한국어 규범에 따르면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이며,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로 구별하여 쓰지만<sup>29)</sup>, 이 두 조사의 발달 과정과 경계가 명료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김억은 인용문 발달 과정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라고’가 발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한다면 언어침식이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루이 장 칼베가 언어침식 과정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했듯이, 일제강점기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대 이후 한국에서 생겨난 ‘국문의식’이 식민 상태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의 ‘어문운동’이 지속된 것도 이를 증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지식인 가운데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을 염려하는 각종 담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다음 자료는 1920년대 재일 유학생의 저항 담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1920년대 초 일본어 영향력에 대한 저항 담론]

1. 言文上으로 보는 損失: 우리는 게우 脊背의 나를 면하자 글방에

28) 김안서, 「언어의 순수를 위하여」(2), 『동아일보』, 1931. 3. 31.

29)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에 따르면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로 풀이하고 있다. (검색일: 2026. 2. 28.)

서 漢字를 배앗섯다. 普通學校에서는 倣假名字를 學習하얏스며 조금 더 高等으로는 羅馬字를 안이 배울 수 업는 事情이다. 우리의 過去 教育은 太半이 幾種類의 文字를 學習하기에 지내지 못하얏다. 文字를 學習하는 것이 學問의 主部分인 줄 알앗든 옛적 가트면 모르겠지마는 이미 世界的 競爭이 開放한 時代이라. 許多히 知識上의 배울 것이 만타. 이다 지 한계가 업는 外國 文字의 學習으로 貴重한 時間을 보내는 것은 우리 과거 教育의 大缺點이다. 教育의 興振치 못한 禍根이다.(중략) 이와 가치 우리는 純全한 言文學上의 觀念으로 보면 假名 文字는 우리에게 대 하야 한 外國文字이다. 假名文字로 記述되는 말은 日本語이요 우리의 固有한 言語가 안이다. 아주 語系가 다른 英語와 獨語갓치 그다지 雲泥의 差가 업다 하드리도 우리에게는 外國語가 되는 것은 明確한 事實이다.<sup>30)</sup>

ㄴ. 智識階級에게 告誡: 나는 朝鮮 사람이란 朝鮮사람에게 向하야 그 中에도 知識階級에 대하야 忠告코져 하노라. 우리 가운데는 通常 言論 中에 日語를 半分 乃至 三分가량 混用하는 자 잇스며, 英語를 아는 자는 우리말에 日語와 英語를 三分式 混用하야 거의 어느말인지 몰나 드를 種類말을 造成하며 相對者가 올으듯던지 몰나듯던지 저 혼자 자랑삼아 榮光삼아 비위 좃케 짓거린 相對者가 못 알으듯갓다 하면 一方的 이기 기 좃코 지기 실힘은 사람 常情이라. (중략) 假令 特殊한 外國 風俗-熟語나 科學上 術語 갓흔 것은 할 수 업것지만은 近來 新青年은 外國語 混用하는 거시 자랑이요 이거시 知識階級の 表示인 것 갓다. 社會를 教育하는 機關인 新聞이나 雜誌 붓딴을 잡고 自己 意思를 發表하는 筆者 諸君 中에도 亦是 적지 안은 廢風이 잇다.<sup>31)</sup>

이 두 편의 논설은 제일 유학생 기고문으로, 당시 한국에서의 언어학습 상황과 일본어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산생이라는 필자의 논설에서 확인되듯이,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한자, 가나문자, 로마자’ 등

30) 「言文學上으로 보는 損失(京都에서 일산생)」, 『동아일보』, 1921. 5. 5.

31) 李相壽, 「언어를 혼동치 마라(3)」, 『조선일보』, 1921. 9. 17.

외국 문자 학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그로부터 자국어와 문자의 귀중함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상수의 기고문은 언어사회학적 관점에서 언어침식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지식 계급이 통상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대화하며, 신문·잡지의 언어에도 혼종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상수는 언어침식에 앞장 선 지식인들을 향해, ‘1) 서양 문명을 외국어로 직수입하기 위해 조선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가?, 2) 일반 독자가 외국어를 넉넉히 알아볼 수 있다고 여긴 것인가?, 3) 흔히 쓰는 핑계대로 번역을 할 수 없어서인가?, 4) 자기 예술을 자랑하느라고, 또 외국어 아는 정도를 발표하기 위해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전문적인 언어학자의 논술은 아닐지라도, 일제강점기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 과정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의 담론 자료를 종합·정리·분석하는 작업은 언어의 식민화 과정과 실태를 분석하고, 광복 이후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3.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한국어 침식과 그 영향

#### 1) 법률·행정 분야 언어의 특징

루이 장 칼베는 식민적 침략이 군대와 행정관료 집단, 뒤이어 상인집단을 일반적으로 도시에 이식시킴으로써 구체화되며, 침략자와 지역적 동조 계급에 의해 언어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역적 동조 계급으로 매판 자본가, 법률가를 우선적으로 거론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술과 문학적 표현이 지배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사, 경제 분야’의 식민화가 이루어진 다음 본격적인 식민 지배 과정에서는 ‘법

률·행정 분야'에서의 지배언어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함을 추론할 수 있다. 칼베의 표현을 따르면, “행정 체계가 지배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두 언어 병용이 나타나게 되며, 또한 법률적 행위와 공문서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sup>32)</sup> 이는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한국어 침식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 법률 용어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의 정부 조직과 법령 체계는 전통적인 법령 체계와 확연히 다른 까닭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에 따른 용어도 대부분 새로운 개념어로 채워졌다. 예를 들어 1895년 내각인쇄국이 발행한 『법규유편(法規類編)』을 살펴보면, ‘율령문(律令門)’의 ‘형벌’에 ‘유형(流刑)’과 같은 전통적인 형벌이 남아 있지만, ‘재판소, 소송 급 치옥(訴訟及治獄)’에 포함된 대부분의 법령이나 ‘경찰, 위생, 군려, 학제, 공상, 체신’에 포함된 법령들은 대부분 새로운 법률 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시 입장으로 볼 때 해당 법령의 용어와 표현은 일종의 ‘신어’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러한 법령이 제정될 때, 정치적으로 일본의 영향 아래 제정되었으며 근대 일본의 법령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가 영향을 미쳤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조선시대 관료 사회를 경험한 한국 근대의 지적 풍토에서 ‘법률 분야’는 ‘정치학(국가학)’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끈 분야였다.<sup>33)</sup>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 근대의 ‘법률·행정 용어’는 근대식 법령 제정과 근대의 법률학, 정치학이 도입되면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 분야의 하나인 ‘경찰학’과 관련된 용어 사용 양상이다.

32) 이병혁 편, 앞의 책, 138~139 참조.

33) 허재영(2017)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의 학문 분야별 자료』9(부록)에서는 1906년부터 1910년 사이 한국어로 발행된 근대 교과서 464종을 대상으로, ‘가정, 경제, 광물, 교육, 국사, 농업, 독본, 동식물, 문법, 물리, 미술, 박물, 법률, 산술, 측량, 상업, 생리, 세계사, 수신, 역사, 외국사, 외국어, 지리, 전통교육, 정치, 한문, 화학, 기타’ 등으로 분류했는데, 그 가운데 ‘법률’ 30종, ‘정치(국가학)’ 10종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법학]

警察學과 警察法學이라云하는者는 行政學과 行政法學이라云하는者와 如하니, 行政學은 凡百五十年 以來로 歐洲에 在호야 一般 政治學 以外에 行호는 一般 行政에 關호는 事項까지 包含호야 此를 研究호더니, 近日에 至호야는 行政學이란 者는 行政의 事實 及 政略에 關호는 學問이라 稱호고, 行政法學이란 者는 行政 法理를 講究호는 學問이라 稱호에 至호는 지라.<sup>34)</sup>

이 글은 1909년 구한국 서기관이었던 조성구(趙聲九)가 번역한 『경찰학』 제1장 ‘경찰법학’의 시작 부분으로, ‘경찰학, 경찰법학, 행정학, 행정법학’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한다. 이 책은 마쓰이 다케시(松井武)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데, 번역 대상 저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sup>35)</sup> 마쓰이 다케시는 1890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한 뒤, 졸업 후 경시청에 신분 을 두고 대학 연구과에서 경찰법을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1895년 요쓰야(四谷) 경찰서장으로 보임되어 경찰 관료의 길을 걸었다. 1901년 내무성에 의해 유럽으로 파견되었으며 『구미경찰담(歐米警察視察談)』(1902), 『베를린 경찰 연혁사(伯林警察沿革史)』(1903), 『각국 경찰제도(各國警察制度)』(1906) 등을 저술했다. 또한 러일전쟁 직후 한국 부산 이사청 이사관(韓國釜山理事庁理事官)으로 취임했으며, 1906년 8월부터 1910년 6월까지 한국 내무경무국장 통감부 참여관(參與官)으로 근무했다.<sup>36)</sup>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근

34) 松井武, 趙聲九 譯, 『警察學』, 大同廣智社, 1909.

35) 조성구 번역의 『경찰학』 표지에는 ‘내무 경찰국장 통감부 참여관 법학사 마쓰이 다케시(松井武) 저’, ‘내무 서기관 조성구 역’, ‘문화당(文華堂) 발행’이라고 되어 있다. 책의 ‘자서(自序)’에는 “1901년(메이지 34년) 6월 구주 도항도차(歐洲渡航途次) 마쓰이 다케시(松井武) 식”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유럽 파견 과정에서 쓴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허재영 역음(2013)에서 이각종의 『주해형법전서』와 함께 영인되었다.

36) 마쓰이 다케시(松井武)는 통감시대 ‘영국의 이집트 경찰 제도’를 조사하여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경찰 제도 운영 방식을 입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쓰이 도시히코(松田利彦, 2000)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대 한국에서의 법률 용어는 서양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들의 법률·행정 및 법률학·행정학 관련 번역 한자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변용하여 수용한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강점기 법률·행정 용어는 통감시대의 번역 한자어의 한국 한자음 용어 대신 일본문으로 쓰인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강제병합의 결과 ‘조선총독부령 공문식(朝鮮總督府令 公文式)’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도령(道令)’, ‘조선총독부 경찰총감부령(警察總監部令)’, ‘조선총독부 경무부령(警務部令)’(이상 1910.10.1. 조선총독부령 제1호~제4호로 공포)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모두 일본문으로 된 법령이었다. 주목할 점은 조선총독부의 『관보(官報)』인데, 이 매체는 조선총독부의 시정 방침과 관련된 법령 및 기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제정된 칙령과 각종 법령을 전달하는 정부 기관지로 극히 일부 법령만 조선문 번역본을 수록했다. 달리 말해 강제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률·행정이 모두 일본어화한 셈이다. 더욱이 이 관보에 실린 ‘조선문 번역본’은 강제병합 직후부터 1922년까지만 나타나며, 이후에는 모두 일본문으로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일본어는 한국어를 침식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박탈하는 수준까지 강제된 셈이다. 그렇지만 강제병합에 따라 강압된 일본문 법률·행정 용어가 피지배 민족인 조선인에게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웠다. 이 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문으로 된 각종 법률·행정 용어 관련 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각중의 『주해 형법전서』(1913)<sup>37)</sup>, 강매 감수·신문사 편집국의 『간명 법률경제숙어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1917)<sup>38)</sup>, 이원규의 『법률문답 계약서식 대전(法律問答 契約書式大全)』(1916)<sup>39)</sup>을 들 수 있다. 『주해 형법전

37) 이각중, 『주해 형법전서』, 광동서국, 1913.

38) 신문사 편집국 편, 『간명 법률경제숙어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 신문사, 1917.

39) 이원규 편, 『법률문답 계약서식대전(法律問答 契約書式大全)』, 경성 박문관, 1916.

서』는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입법 이유와 법리(法理)’를 설명한 책으로, 저자가 서문에서 “우리 조선에서는 종래로 법은 법관만이 홀로 아는 것이며, 인민은 이를 알아야 할 바 아니라고 잘못 믿어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어떤 행위는 국가가 왜 이를 처벌하는 지 이유를 알지 못함”, “지금 조선형사령 실시 결과, 형사(刑事)에 관한 일본의 제반 법률이 일시에 적용됨”, “형법은 유한한 조항으로 무한한 상태를 망라한 까닭에 문구의 난해와 의의(意義)의 의혹이 있음” 등을 저술 이유로 제시했다.<sup>40)</sup> 즉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문으로 일본 법령을 주해(註解)해야 하는 배경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법률어의 식민화 과정을 드러내는 셈이다.

신문사의 『간명 법률경제숙어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는 한국에서 거의 처음 발행된 전문용어 사전으로, 이 시기 법률·행정 용어의 침식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허재영에 따르면 이 사전은 총 3,929개의 법률·경제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찬 목적은 ‘법률·경제학을 홀로 공부하는 사람들’, ‘중등교육 법률·경제학 참고용’, ‘문관 시험 수험자’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sup>41)</sup> 이러한 목표는 그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법률경제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08년 아오키 다카시(青木隆) 『법률경제숙어사전(法律經濟熟語辭典)』이다. 이 사전은 ‘서문’에서 “법치국가의 진수는 법률에 따라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규정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오로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유무와 증감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법률 명령의 용어 자체가 전문학 특유의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학의 식견으로는 쉽게 이를 이해할 수 없으니, 뜻 있

40) 이각중, 앞의 책, 1~2쪽.

41) 허재영, 「전문용어 사전의 관점에서 본 『간명 법률·경제 숙어 사해』」, 『한국사전학』 제21호, 한국사전학회, 2013. 이 사전에 수록된 와타나베 도루(渡邊暢)의 서문과 편집자 서문을 통해, 사전 편찬자가 강매(姜邁)였음을 밝히고, 편찬 동기, 용어 선정 및 배열 원칙, 용어 정보와 용어 현상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는 자, 법서를 펼쳐 그 정신을 탐구하고자 해도 소위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없기에 훌륭한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라고 서술한다.<sup>42)</sup> 또한 ‘법례’에서 “법을 경제학의 독학자를 위한 친절한 스승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의 상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법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학설을 참고하였으므로 중등교육에 있어 법정 경제학의 좋은 참고서가 되며, 문관 시험 응시자의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로 목표를 밝혔다.<sup>43)</sup> 이 사전의 표제어는 4,100여 개에 이르며, 50운 순서가 아닌 ‘이로하(伊呂波)’에 따라 표제어를 배열하였다. 표제어 구성과 풀이는 ‘표제어’, ‘일본음’, ‘의의(意義)’, ‘예해(例解: 서적에 쓰인 용례 중심)’, ‘주(註)’, ‘참조(參照: 주로 법령)’로 이루어졌는데, 표제어마다 이들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 표시(意思いしノ表示(へうし))’는 ‘표제어, 일본음, 의의, 예해, 주, 참조’가 모두 나타나나, ‘위계(位階(ゐかい))’는 ‘표제어, 일본음, 의의, 주, 참조’만 들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신문사의 『간명 법률경제숙어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에도 적용되었는데, 이 사전은 일제강점기 법률, 명령, 시행 규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글 가나다 순의 배열을 지키고 있으나 한자를 기준으로 용어를 제시했다. 용어의 풀이 방식은 한자 표제어와 그에 대한 일본음을 부속한 다음,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을 제시하고, 해당 용어를 주해하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2) 青木隆(1908) 序文. 法治國ノ眞髓ハ法律ニ依テ, 治者被治者ノ關係ヲ規定シ國民ノ權利自由ハ一ニ法律ノ規定ニ依テ其有無消長ヲ明確ナラシムルニ依リ(中略) 法律命令ノ用語タル素ヨリ専門學特有ノ術語タレバ普通學ノ眼識ヲ以テ容易ニ之ヲ了解スルヲ得ズ於此乎, 篤志者, 律書ヲ繙テ其精神ヲ探求セント欲スルモ所謂專門的, 術語ヲ了解スル能ハザルタメ芳志ヲ貫徹スル能ハズ(下略)

43) 青木隆(1908) 凡例. 一 本書編纂の目的は法律經濟學, 獨修者のため懇切なる良師たらんとするにあり雖然一般讀者の常識を以て解讀し得る程度に於ては成るべく法理に基き斬新なる學說を參酌したれば中等教育に於ける法政經濟學の良參考書たり又文官試驗受験者の好伴侶なり.

[용어 주해 사례]

[가]

【家[いへ]】

民, 七三三ノ一, 七三四, 七三五, 七三六, 七三七ノ一

[註解] 家は 戶主及家族으로부터 成立한 것이니 家族制度의 基礎的 團結이라.

個人制度가 流行하는 歐洲에서는 一夫一婦의 結合한 것은 國家 組成分子의 單位라. 然하나 家族制度가 流行하는 邦國에서는 家가 卽 國家 組成分子의 單位라. 故로 新民法에는 家라 云하는 無形의 團體를 認定 하니 木石으로써 構成한 建造物과는 其趣가 大異함이다. 民法 七三三條 一項에 ‘子는 父家에 入한다’ 함은 子된 者는 父가 構成한 家族 團體된 家에 家族이 된다는 義라.

이와 같은 구성은 위에 설명한 아오키 사전과 유사한 방식이며, 심지어 두 사전의 책명과 표지 형태도 매우 유사하다. 책표지 형태, 서문, 범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신문사 사전은 어떤 경로이든 아오키 사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좀 더 주목할 사실은 이와 같은 사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침식 현상이다. 엄밀히 말하면 ‘가’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한자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법률 용어로서의 ‘가’는 ‘가족제도의 기초 단위’로 정의하고, 주해에서 ‘서양과 달리, 방국(일본)에서는 ‘개인 본위’가 아니라 ‘가족 본위’로 국가가 구성된다고 풀이해 놓았다. 한자와 일본문을 부속한 표제어 제시 방식뿐만 아니라, 주해한 내용에서 ‘일본(한국)의 집단 의식’을 강조한 것은 언어의 식민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강조된 ‘집단의식’은 한국에서 수신 교육(일제강점기뿐 아니라 광복 이후에도)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문필가들이 “서양인은 개인주의가 강하며, 동양인은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식의 수필을 남긴 경우도 있다.

## 2)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한국어 침식과 그 영향

식민 통치에서 법률과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지배언어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정 행위와 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언어침탈 또는 침식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언어정책은 본질적으로 모든 조선인이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완전히 동화되는 상태를 목표로 삼았다.<sup>44)</sup> 그 과정에서 ‘법률·행정’은 식민지 동화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 법률·행정은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일본어 법률 용어 사전, 또는 공문 서식 관련 서적은 일제강점기 한국어 침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일본백과사전편집부의 『법률대사전(法律大辭典)』(1910~1911)<sup>45)</sup>, 간다 도요호(神田豊穂) 『정치법률사전(政治·法律辭典)』(1933)<sup>46)</sup> 등은 아오키 사전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활용한 법률 사전류이며, 1932년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본부에서 편찬한 『조선 공용문 연구(朝鮮公用文の研究)』, 1938년 오야케 요시이치 『조선 공문기안의 실제(朝鮮公文起案の實際)』, 1941년 오야케 요시이치 『공문기안의 기초 지식(公文起案の基礎知識)』 등은 식민지 조선의 공문 작성과 관련된 서식류 안내서이다.<sup>47)</sup>

이러한 배경에서 이원규의 『법률문답 계약서식대전(法律問答 契約書式大全)』(1916, 이하 서식대전)<sup>48)</sup>, 조선출판연구회의 『인생처세 법률요감(人

44) 박봉배, 『한국 국어교육 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허재영, 『일제강점기 어문정책과 어문생활』, 경진, 서울, 2011. 이에 대해서는 박봉배와 허재영 등이 비교적 상세히 논의되었다. 박봉배는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노예교육, 우민화교육, 동화교육’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언어정책도 마찬가지다.

45) 大日本百科辭典編輯部 編, 『法律大辭典』 1~3卷, 同文館, 1910~1911.

46) 神田豊穂, 『政治·法律辭典』, 龍文舎, 1933.

47) ‘공용문’은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를 지칭하며, ‘공문 언어’로 불리기도 한다.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본부(1932), 오야케(1938, 1941)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生處世 法律要鑑』(1926)<sup>49)</sup>과 같은 조선문 서식류 서적은 일본어에 의한 한국어 침식 과정을 보여주는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원규의 서식대전은 ‘서론’, 제1편 ‘민법’(물권, 채권, 기한 및 조건부 법, 시효, 법률행위의 동의 및 허가, 법률행위의 취소, 법인의 정관 및 기부 행위), 제2편 ‘상법’(상호, 상업 사용인, 대리상, 교호계산, 익명조합, 운송 취급영업, 운송영업, 회사)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법률행위의 성질’을 설명한 뒤, ‘증서(證書)’의 종류와 기능을 제시하여, 각 편에 포함된 권리와 의무, 그와 관련된 서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어침식 차원에서 이 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책의 구성과 내용보다 문자사용 방식, 즉 공문서의 문체에 있다. 달리 말해, 이 책에 제시된 상당수의 서식류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에 일본문을 부속하는 문체를 사용한다. 다음을 살펴보자.

[共有物契約書]<sup>50)</sup>

何道何郡何面何里何番地

朴春吉

何道何郡何面何里何番地

李長烈 (中略)

一.右當事者는 [ハ]左의 [ノ]不動産에 [ニ]對호야 [シテ]共有者을 [ヲ]有할 [スル]事

(中略)

一.各當事者는 [ハ]前記土地의 [ノ]受益에 [ニ]對호야는 [シテハ]各持分의 [ノ]比例로써 [ヲ]以テ此를 [ヲ]取得할 [스ル]事(下略)

48) 이원규 편, 앞의 책.

49) 조선출판연구회 편, 『인생처세 법률요감(人生處世 法律要鑑)』, 경성서관 출판부, 1926.

50) 이원규 편, 앞의 책, 14~15쪽.

이 서식에 쓰인 문자는 ‘한자’를 중심으로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조선문(한글), 조선문에 부속된 일본문 등 세 가지이다. 김영민이 논의된 것처럼 ‘부속문체’는 어떤 문자를 부속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sup>51)</sup>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국문위본(공문서에서 한국 문자를 중심으로 사용함)’을 천명한 뒤, 완전한 한글 전용을 이루기까지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거나 괄호 안(또는 한자 옆)에 병용하는 문체가 일반적으로 쓰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어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한국 문자를 부속하거나 그 반대로 한국어에 일본 문자를 부속하는 형태는 근본적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 방침, 또는 식민 통치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조선어를 시급히 배워야 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재영(2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속문체는 통감시대 『구한국관보』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52)</sup> 예를 들면 관보 제4,667호(1910년 5월 2일) ‘주식회사 등기’와 관련된 ‘공고문’에 ‘一株/[의]金額’과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관보에 등장한 ‘등기 공고문’은 일본문에 조선문을 부속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생처세 법률요감』에 포함된 다수의 서식도 법률·행정 분야의 침식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표지에서 조선출판연구회 편찬이라고 밝혔지만, 판권의 편집 겸 발행자는 김재덕(金在奭)으로 되어 있다. 책의 목차를 제시하기 전에 송정 박승호(松亭 朴承鎬)의 서문과 편집자 김재덕의 ‘서언’이 있는데, 이 두 글은 그 당시 법률 서식이 갖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

51) 김영민,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52) 허재영, 「근대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박승호의 서문 일부]

오늘날 20세기는 사회시대이다. 가족이 사회가 아니면 이로써 단체를 이룰 수 없고, 이웃이 사회가 아니면 단체를 이룰 수 없으며, 상공업이 사회가 아니면 단체를 이룰 수 없다. 사회 단결에는 법률의 효과가 날로 필요하고 확장된다. 아, 극심(棘心)의 세상이 변하고, 송목(嵩目)의 시절이 간난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헤아림에, 우리의 재산, 지위, 명예, 신분, 권리가 바람 앞의 이슬과 같은 처지를 만회하게 하려면, 정의를 이끌고, 허황된 질서를 평안하게 하는 법률에 있을 뿐이니, 어찌 등한히 하며 어찌 그것을 면하겠는가. (중략) 경성서관 주인 김재덕 군이 여러 해 고심하고 세상에 적당한 것을 집작하여 편집한 것인즉, 그 내용이 우리 인생 처세상 지침이 될 만한 현재의 민형법 문답, 경찰 처벌령, 소송 신청 원계(願屆: 문서) 전부를 남녀노유의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쉽도록 상세히 풀이한 것이다.(논자가 현대어로 번역함)<sup>53)</sup>

이 글은 ‘식민’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법률·행정 서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법률의 기능이 ‘사회 의식’, 즉 ‘집단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모든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며,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민형법, 경찰 처벌령, 소송 신청 등과 관련한 지식과 서식 작성 원리에 대한 조선문 서적을 발행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책 내용은 ‘현행 형사편’, ‘민법 질의 문답’, ‘경찰법규에 위반한 죄’, ‘정치 및 보안에 관한 범죄’, ‘소장신청원계 제서식(訴狀申請原屆諸書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문체는 법령 문답의 경우 한자·한글 혼용문의 한자에 한글을

53) 現今 二十世紀 社會時代라. 家族이 非會면 無以成團體요 鄰里非會면 無以成團體요 商工이 非會면 無以成團體라. 以會團結에난 法律에 效果가 日益緊張하니 噫라. 棘心世變하고 嵩日時艱하야 思之又度에 吾人에 財産, 地位, 名譽, 身分, 權利가 風前草露之勢를 挽回케 하라면 正義를 指導하고 空序를 安堵하난 法律에 在하니 何爲等閑이며 豈不勉哉아. (中略) 京城書館主 金在憲 君이 宿年 苦心하고 適世斟酌하야 編集인 바 其 內容이 吾人 人生 處世上 指南이 될 만한 現今 民刑法 問答, 警察處罰令, 訴訟 申請願屆 全部를 男女老幼에 一般 普及케 容易하도록 詳解한 것이다. (조선출판연구회 편, 앞의 책, 서문)

부속한 문체가 중심을 이루며, 소장 관련 서식의 경우 이원규의 『서식대전』에 나타나는 ‘일본문 부속 문체’가 주로 쓰였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언어침탈과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운동과 정책이 등장한다. 박봉배가 정리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조직’(1945.9.16.), ‘한국어를 교수 용어로 정함’(1945.9.18.), ‘교육방침결정’(1945.9.22.), ‘개교명령’(1945.9.29.), ‘교과서 발행’(1945.11.20.: 조선어학회의 『한글첫걸음』과 『중등국어교본』 상권), ‘교수요목 제정위원회 발족’(1946.2.21.: 46년 11월 15일 제정·공포됨), ‘창씨개명에 관한 법령 공포’(1946.10.23.), ‘학술용어 제정위원회 설치’(1946.3.22.), ‘국어정화위원회 발족’(1947.1.27.: 48년 2월 3일 정화안 발표), ‘한국어 공용어화’(1947.7.28.)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54</sup> 특히 미군정기 행정명령 제4호(1947.6.28.)에서는 “남조선 과도정부의 공용어를 조선어로 지정함”이라고 하여, 1945년 9월 7일 맥아더에 의해 발표된 ‘포고 제1호’의 ‘영어’ 공용어를 ‘한국어’로 공식화하였다.<sup>55</sup> ‘남조선 과도정부’는 1947년 5월 17일 미군정청 민정장관 안재홍(安在鴻)과 군정장관 아취 엘 러취가 인준한 ‘법령 제141호’에 따른 명칭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 사법 부문 등 재조선 미군정청 조선인 기관을 입의(立議)에서 법률로 제정될 때까지” 부르고자 한 이름이다.<sup>56</sup> 달리 말해 조선인 중심의 입법

---

54) 박봉배, 앞의 책.

55) 『미군정관보』 1947.6.28. 南朝鮮過渡政府 行政命令 第四號. 南朝鮮過渡政府의 公用語를 朝鮮語로 指定함. 極東軍指揮官 美國陸軍大將 더글러스·맥아-더로부터 賦與된 權限에 依하여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 맥아-더 大將이 發布한 布告 第一號(朝鮮住民에게 布告함) 第五條를 左와 如히 改正함. “軍政期間 中은 英語를 公用語로 함. 英文과 朝鮮文 又は 日本文間에 解釋 又は 定義上 不明 又は 不同이 있는 境遇에는 英語를 公用語로 함. 但 一九四七 七月 一日부터는 南朝鮮 過渡政府의 公用語는 朝鮮語로 함.”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八日 軍政長官 代理 美國陸軍代將 시·지·헬믹.

56) ‘남조선 과도정부’는 군정청 법령 141호에 따라 1947년 5월 17일부터 북위 38도선 이남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재조선 미군정청 조선인 기관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기관이 설립되어 정부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 전, 군정청 내의 조선인 기관을 ‘과도정부’라고 부른 셈이다. 이 포고문은 미군정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정청에 설치한 ‘남조선 과도정부’와 관련된 것이지만, 미군정기 ‘한국어’를 공용어로 회복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운동과 정책 속에서도 오랜 기간 침식된 언어를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음을 살펴보자.

[新朝鮮法の 搖籃-司法部서 刑法要綱 等 決定]

사법부(司法部)에서는 일정시대의 법률이 가지고 있는 폐단을 일소하고, 우리 국정에 알맞은 법률을 제정하고자 법제편찬위원회(法制編纂委員會) 내에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을 위시하여 형법(刑法), 헌법(憲法), 상법(商法) 등 제법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편찬한 요강이 완성되어 四월 二十八日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요강을 편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이번 편찬에 있어서 주로 국어로 된 법률을 제정과 내용에 있어서 왜색이 농후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장점을 반영시켰다 하는데, 각 조문은 五월 二十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었고, 결정된 초안은 수립될 국회(國會)의 통과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은 장구한 시일이 필요하게 됨으로 그때까지 이 초안을 통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sup>57)</sup>

이 기사는 정부 수립 직전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틀을 일제강점기의 법률에 근거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왜색이 강한 조문 삭제’, ‘민주주의 장점 반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법률의 형식과 내용에서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침식 문제를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57) 『경향신문』, 1948. 4. 29.

‘법률·행정 분야의 문자 사용(한자 중심)’, ‘난해한 용어를 바꾸어 쓰는 문제’, ‘공문서의 형식과 언어 표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한자 사용 문제는 1948년 10월 8일 법률 제6호 ‘한글전용법’이 공포되었음에도 각종 서류나 신문·잡지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볼 수 있다. 1896년 『독립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순국문 신문이 존재했듯이, 1988년 5월 15일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문자 사용 차원에서 일본식 한자 사용 풍토를 벗어나는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법률·행정 분야’의 경우 한글 전용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 또한 일본식 법률·행정 용어를 청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송도영·박태숙의 『신정 법률소사전(新訂法律小辭典)』(1954)은 광복 이후 한국인이 편찬한 사전으로 1,150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했다.<sup>58)</sup> 그 가운데 ‘갱개(更改: 경개. 채무 요소를 변경하여 이전 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유상 계약, 매료(買戻: 매려. 환매(還買)에 해당한 일본어 買戻(かいもど)를 줄인 한자어), 상쇠(相殺: 상쇄. 일본어 そうさい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 등과 같이 일본어에서 유래한 한자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 편찬자의 잘못이라기보다 광복 이후 지속된 일제강점기 일본어 침식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언어의 탈식민화 차원에서 법률·행정 용어 다듬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sup>59)</sup>, 김수천과 국문사가 발간한 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60)</sup> 법제연구원과 법제처·안양대 산학협력단 등의 ‘알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에 대한 연구 등도 언어침식을 극복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행정 분야

58) 송도영·박태숙 편, 『신정법률소사전(新訂法律小辭典)』, 자선사, 1954.

59) 이와 같은 용어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순화어 자료집’이나 법률 전공자들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한 경우도 많다.

60) 김수천, 『기본 법률용어 알기쉬운 사전』, 동아, 1985; 국문사, 『(알기쉬운) 법률용어』, 국문사, 2004.

공문에 의한 언어침식의 영향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정책의 하나로 ‘공공언어정책’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sup>62)</sup>를 의미한다. 국어원의 공공언어정책은 ‘정확성’(표기와 표현)과 ‘소통성’(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침식으로부터의 탈식민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 법률·행정 분야의 언어침식은 공공언어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때 탈식민화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 4. 결론

이 연구는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한국어 침식 현상과 언어의 탈식민화 문제를 법률·행정 분야의 언어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언어침식은 루이 장 칼베가 1974년 『언어학과 식민주의』에서 사용한 신조어 ‘글로타파지 (glottophagie)’를 번역한 용어로, 언어의 식민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 지배는 본질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피지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로 이어진다. 언어의 식민화는 식민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지배 언어로의 완전 동화를 목표로 하든, 아니면 지배언어와 피지배언어가 이중 언어로 존재하든 피지배언어에 지배언어가 침식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침식에서 법률·행정 분야의 언어는 다른 분야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

61) 한국법제연구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역사업』, 법제처, 2021; 법제처·안양대 산학협력단, 『알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법제처·안양대학교, 2022.

62)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2022, 8쪽.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언어학의 한 부류인 언어사회학적 관점에서 언어의 식민화와 관련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어의 식민화는 1950년대 파농, 사르트르 등의 식민주의와 인종 차별, 성과 관련된 철학적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74년 루이 장 칼베의 글로타 파지가 제안된 이후 2009년 엑상 프로방스, 2024년 함마멧-튀니스 학술 대회 등과 같이 언어의 식민화라는 주제는 거시 사회언어학의 주요 연구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둘째, 근현대 일본어의 영향력과 언어침식은 광복 이후 한국어 회복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시 사회언어학적 차원의 언어 식민화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어 침식과 관련한 실증적인 사례 연구, 데이터 연구, 언어침식의 영향 등과 관련한 연구 성과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어의 영향력에 따른 한국 지식인과 유학생의 치우친 언어의식이나 지배언어에 저항하는 담론 등은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언어침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 법률·행정 분야 언어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근대식 법령이 등장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볼 수 있으나, 근대의 법률·행정은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법률·행정은 모두 일본어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일본어는 한국어를 침식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박탈하는 수준까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법률·행정 관련 조선문 서적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서적은 결과적으로 일본어의 한국어 침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넷째, 법률·행정 분야에서의 한국어 침식 상황과 그 영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법률·행정 분야의 언어침식은 조선문 공문 서식의 문체나 법률·행정 관련 용어에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감시대 이후 한자와 조선문을

섞어 쓴 문장에 일본문을 부속하거나, 일본문에 조선문을 부속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언어침식이 지배계급으로부터 일반 민중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휘의 경우 법률 사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용어가 일본 법령, 행정 문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용어와 표현은 광복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식민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지배언어와 자국어의 관계, 자국어와 문자에 대한 언어공동체의 의식과 관련한 탈식민적 연구를 위해서는 통시적 관점의 데이터 해석과 연구 방법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1. 1차 자료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2022.
- 국문사, 『(알기쉬운) 법률용어』, 국문사, 2004.
- 국학자료원, 『조선총독부 시정연보』1차, 국학자료원, 2015.
- 군정청 문교부, 『우리말 도로 찾기』, 군정청 문교부, 1948.
- 김수천, 『기본 법률용어 알기쉬운 사전』, 동아, 1985.
- 송도영·박태숙 편, 『신정법률소사전(新訂法律小辭典)』, 자선사, 1954.
- 宋完植, 『最新百科新辭典』, 文化社, 1927.
- 신문사 편집국 편, 『간명 법률경제숙어사해(簡明法律經濟熟語辭解)』, 신문사, 1917.
- 이각중, 『주해 형법전서』, 광동서국, 1913.
- 이원규 편, 『법률문답 계약서식대전(法律問答 契約書式大全)』, 경성 박문관, 1916.
- 조선출판연구회 편, 『인생처세 법률요감(人生處世 法律要鑑)』, 경성서관 출판부, 1926.
- 허재영 역음, 『경찰학(警察學)·주해 형법전서(註解刑法全書)』, 경진, 2013.
- 허재영, 『근대계몽기 학술 잡지의 학문 분야별 자료』9(부록), 경진, 2017.
- 大宅義一, 『朝鮮公文起案の實際』,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8.
- \_\_\_\_\_, 『公文起案の基礎知識』,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41.
- 大日本百科辭典編輯部 編, 『法律大辭典』1~3卷, 同文館, 1910~1911.
- 神田豊穂, 『政治·法律 辭典』, 龍文舎, 1933.
- 亞細亞文化社, 『舊韓國官報』,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3.
- \_\_\_\_\_, 『朝鮮總督府官報』,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4.
-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編, 『朝鮮公用文の研究』, 行政學會印刷所, 1932.
- 青木隆 編, 『法律經濟熟語辭典』, 清水書店, 1908.
- 青木隆, 『法律經濟熟語辭典』, 清水書店, 1908.

## 2. 논저

- 고영진·김병문·조태린 편, 『식민지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소명출판, 2012.
-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동악어문학』 제54집, 동악어문학회, 2010.
- 김영민,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 강제된 일본어 교육이 <나무꾼과 선녀> 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 루이 장 칼베, 김병욱 옮김, 『언어와 식민주의-언어 포식 이야기』, 유로서적, 2004.
- 三ツ井崇, 『朝鮮植民地支配と言語』, 임경화·고영진 옮김,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소명출판, 2013.
-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옮김,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 박봉배, 『한국 국어교육 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법제처·안양대 산학협력단, 『알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법제처·안양대학교, 2022.
- 서민정, 「문화 복수성의 관점에서 읽는 식민지의 언어」, 『코기토』 제76집,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이병혁 편, 『언어사회화서설-이데올로기와 언어-』, 까치, 1986.
- イ・ヨンスク, 『「国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인식』, 소명출판, 2006.
- イ・ヨンスク, 『「ことば」という幻影—近代日本の言語イデオロギー』, 이재봉·사이키 카쓰히로 옮김, 『말이라는 환영-근대 일본의 이데올로기-』, 심산출판사, 2012.
- 한국법제연구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역사업』, 법제처, 2021.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허재영, 『일제강점기 어문정책과 어문생활』, 경진, 서울, 2011.
- \_\_\_\_\_, 「근대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제114집, 한국어문학회, 2011.
- \_\_\_\_\_, 「전문용어 사전의 관점에서 본 『간명 법률·경제 속어 사해』」, 『한국사전학』 제21집, 한국사전학회, 2013.
- \_\_\_\_\_, 「〈우리말 도로 찾기〉의 국어 순화 원리」, 『사회언어학』 22권 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14.
- \_\_\_\_\_, 「근대 계몽기 외국어 교육 실태와 일본어 권력 형성 과정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44집, 동북아역사재단, 2014.
- 현희순, 「언어제국주의 관점으로 본 미군정시대의 영어정책」, 『인문학연구』 제19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松田利彦, 「韓国併合前夜のエンブト警察制度調-韓国内部警務局長松井茂の構想に關連して-」, 『史林』 83-1, 史学研究会(京都大学文学部), 2000.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lated by Charles L. Markmann.

- London: Pluto Press, 1967. (노서경, 2014,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네)
- Gasquet-Cyrus, Médéric, Alain Giacomi, Yvonne Touchard, and Daniel Véronique, eds. *Pour la (socio)linguistique: Pour Louis-Jean Calvet*. Paris: L'Harmattan, 2010.
- J.Sartre, Jean-Paul. "What Is Literature?" and Other Essays. Translated and edited by Steven Ung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Jean-Paul Sartre, Black Orpheus. *The Massachusetts Review* 6, no. 1, 13~52, 1964.
- Louis-Jean Calvet,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aris: Payot, 1974.
- Nelson Maldonado-Torres, *On the Coloniality of Bein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a Concept*, *Cultural Studies* 21, no. 2-3 (2007): 243. cited in Sayeh Sayedayn, 202, 134.
- Ravishankar, Ananya Usharani. "Linguistic Imperialism: Colonial Violence through Language." Paper presented at the *Language: Uses and Misuses Conferenc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June 2021.
- Sayeh Sayedayn, *Language & Colonization: Statement of the Problem*, *Journal of School & Society*, 7(1) 134~138, 2021.
- Senghor, Léopold Sédar, ed.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aris: Quadrige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5.

## The influence of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ese and the eros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fields and its impact

Kwon, Hee-Ju · Heo, Jae-Young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language and the resulting erosion (glottophagie) of the Korean language from the modern era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It also aims to describe the significance of this erosion i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fields and its impact after liberation. “Language erosion” is a translation of the neologism “glottophagie” used by Louis-Jean Calvet in *Linguistics and Colonialism*, and is a useful concept for studying linguistic colonization. Colonial rule is achieved for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resulting in widespread invasions of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In particular, “law and administration” are the primary means of solidifying the ruling system and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most crucial areas of linguistic colonization. Modern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emerged in Korea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and even then, Japanese influence was significant. Moreov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l law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implemented in Japanese. Korean-language legal terminology dictionaries, translations of laws, and official document booklets appeared, targeting some Koreans. However, the addition of Japanese terms to dictionary entries and formal

sentences based on Chinese characters led to linguistic erosion. Numerous legal and administrative terms were also based on Japanese laws. Consequently, despite the active movement to restore the Korean language after liberation, the impact of this linguistic erosion persis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not only in style and vocabulary but also in linguistic awareness.

Key Words: Language Erosion (glottophagie), Japanese, Influence,  
Legal and Administrative Terminology, Linguistic  
Awareness

· 논문투고일: 2026년 3월 5일 · 심사완료일: 2026년 4월 24일 · 게재결정일: 2026년 4월 29일